

선 거 일 정 공 고

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차기 수석부회장 선거 및 차기 회장 결격사유 검토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.

- 아 래 -

I. 차기 수석부회장 선거

1. 선출대상 : 수석부회장
2. 선 거 일 : 2026년 11월 24일 14:00~15:00
3. 장 소 : 오송H호텔
4. 선거방법 : 비밀 투표, 직접 투표(사전 우편 투표 가능)
*사전 우편 투표시 11월 15일~11월 23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
5. 후보자 등록
가. 등록기간 : 2026년 10월 19일 09:00~10월 25일 18:00(7일)
나. 등록서류 : 후보자등록 신청서
다. 등록장소 : 협회 선거관리위원회(협회 사무국, 우편투표 가능)
6. 후보자의 자격 : 선거관리위원회규정 제10조(후보자의 자격) 참조

II. 차기 회장 결격사유 검토

1. 현 수석부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회원은 회원 1/3이상의 동의를 받아 2026년 10월 12일 18:00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
2. 현 수석부회장이 회장 선임을 원하지 않을 경우 2026년 10월 12일 18:00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사퇴서 제출
3. 위 제1호에 의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검토결과 결격사유가 있다고 결정되거나 제2호에 해당 될 경우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를 동시에 실시한다.

첨 부 : 1. 후보자등록 신청서 1부
2. 선거일정 1부. 끝.

2026년 10월 01일

한국태양광공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

후보자등록 신청서						사진 3×4cm	
성명		(한글) (한문)					
주소							
생년월일		년 월 일(만 세)		주민등록번호			
직장명				직위			
직장주소							
사회경력 및 이력	년 월 일		경 력 및 이 력 사 항				
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년도 한국태양광공사협회 회장(수석부회장) 후보로 등록하고자 합니다. 년 월 일 입후보자 : (인) 한국태양광공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							
구비서류		1. 후보자등록신청서(1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 사진 부착) 1부 2. 소견서 및 공약사항 1부(유첨)					

(유첨)

회장(수석부회장)후보[소견서]

후 보 자 소 견 서	
후 보 자 공 약 사 항	

※ 소견서 및 공약사항은 A4용지 1매 이내로 작성합니다.

※ 소견서는 회원들에게 선거용 홍보물로 제공됩니다.

[참고]

제10조(후보자의 자격) ① 수석부회장으로 선임될 수 있는 후보자는 정관 제9조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회원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으로 한다.

1. 전·현직 이사 및 부회장
2. 이사회 추천을 받은 자
3. 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

②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현재의 부회장이 회장자격이 부적격으로 결정되거나 현재의 수석부회장이 회장 선임을 원하지 않을 경우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며, 이 경우 회장 및 수석부회장 출마후보는 제1항의 각호와 같다.

제11조(후보자 등록) 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 30일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등록을 신청[별지 제2호서식]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후보자등록신청서 접수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.

②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한다.

③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.

1.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
2.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때

④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후보자에게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.

제14조(선거일)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 및 수석부회장의 임기만료 30일전까지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선거일을 정하여야 한다.

②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는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.

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을 확정하고 투표방법과 선거일을 공고하여야 한다.

[첨부 2]

수석부회장(회장) 선거관련 일정

날 짜	일정명	기한일	정관 규정	선거관리규정
09/17	이사회 선거관리위원위촉			제 3 조(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등)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이사의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하고, 위원 장및부위원장,간사는위원중 에서호선한다
09/17	선관위 구성	임원의 임기 60일전	사무국은 임원의 임기 60일전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지	제 3 조(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등)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장 또는 수석부회장의 임기만료일 전 60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
10/01	선관위 제1차 회의 선거일 공고	(선관위에서 조정가능)		위원장 및 부위원장,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 13조3항 동시안내
10/06 ~10/08	선거인명부 열람	선거일을 공고한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작성하여 3일간 공고		제9조(선거인명부의 작성 및 열람)③ 선거인명부의 열람 기간은 3일로 한다. ⑤선거인명부에 착오·누락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수정
10/12	수석부회장 부적격 의견제출, 수석부회장 희망사퇴 제출 마감일	선거일 45일 전 (11/26)	제13조③항 수석부회장이 차기 회장으로서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회원은 회원 1/30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거 45일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, 수석부회장 본인도 회장 선임을 원하지 않을 경우 선거 45일전 사퇴	제10조(후보자의 자격)②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현재의 부회장이 회장자격이 부적격으로 결정 되거나 현재의 수석부회장이 회장 선임을 원하지 않을 경우 회장 및 수석 부회장 선거를 동시에 실시
10/15 ~10/16	수석부회장의 회장 결격사유 검정(선거관리위 원회)	2일간 검정	수석부회장의 회장 결격사유 검정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시 안내,언제까지 통보후 공지할 것인지도 공고내용에 포함	제7조(위원회의 업무) 9.제출된 수석부회장의 차기 회장 결격사유 검정
10/16	선관위 제2차 회의		수석부회장의 차기 회장 결격사유 검정	
10/16	수석부회장의 회장 결격사유 검정결과 통보			<수석부회장의 차기 회장 결격사유 검정결과 통보>

날 짜	일정명	기한일	정관 규정	선거관리규정
10/19 ~10/25	후보자 등록 기한 (10/19~10/25:7일)	선거일 30일 전	출마후보는 선거 30일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	제11조(후보자 등록) 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 30일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.(별지2호서식)
10/26	후보자 등록 공고 (후보자번호 추첨)			제13조(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) ①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·사퇴·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.[별지 제5호서식] 제21조(투표용지)③ 후보자 게재 순서 등을 위한 후보자 번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 추첨으로 결정한다.
10/26 ~11/23	선거운동기 간(10/26~ 11/25)			제17조(선거운동 기간) 선거운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등록공고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하며
11/23	투표소 설치			제20조(투표소의 설치 등)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일까지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.
11/24	선거일 (총회)	기준일(임 원 임기만료 30일전 임의날짜 지정)	회장, 수석부회장 선출후 회장이 감사, 부회장, 이사 추천후, 총회승인	
11/24	당선인 공고			제28조(당선인 공고)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 및 수석부회장 당선인이 결정되면 즉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공고
12/01	신규임원 선출 기한 일	임원임기 만료 30일 전		
11/30	투표의 효력 등에 관한 이의제기	선거일부터 5일 이내		제24조(투표의 효력 등에 관한 이의제기)② 제1항에 따른 이의 제기를 하려는 후보자 및 선거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(투표의 효력에 관하여는 선거일을 말한다)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
날 짜	일정명	기한일	정관 규정	선거관리규정
12/04	이사회 추천자 투표	이사회는 10일 이내에 다른 후보 1인을 추천하고 선거인단의 과반수이상 의 투표		제26조(당선인 결정)③제2항에서 후보자가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 이사회는 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른 후보 1인을 추천하고 선거인단의 과반수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당선자를 선정 한다
12/10	투표의 효력 등에 관한 이의제기 결정 통지	이의신청 접수일부터 10일 이내		제24조(투표의 효력 등에 관한 이의제기)③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의·결정하되 사전에 이의신청인과 관계인을 불러 소견을 들은 후 기각 또는 선거 및 당선의 효력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과 관계인에게 통지
12/31	임원 임기 만료일			

[참고]

제13조(임원의 선출) ①본회의 임원은 제6조에 의한 회원이어야 하며, 수석부회장은 총회에서 당연직 회장으로 추대되고, 부회장, 이사 및 감사는 회장이 추천하고 총회에서 승인한다.

②사무국은 임원의 임기 60일전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지하여야 한다. 수석부회장 출마후보는 선거 30일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하고 총회에서 회원의 직접·비밀선거에 의하여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선출하며, 최다득표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최고 연장자를 당선자로 선출한다.

③수석부회장이 차기 회장으로서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회원은 회원 1/3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거 45일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회장자격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. 또한 수석부회장 본인도 회장 선임을 원하지 않을 경우 선거 45일전에 사퇴할 수 있다.

④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자격이 부적격으로 결정되거나 수석부회장이 회장 선임을 원하지 않을 경우 즉시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를 공고하고, 회장 및 수석부회장 출마후보는 선거 30일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하여야 하며, 총회에서 회장 및 수석부회장을 선출한다.

⑤상근부회장은 회원이 아닌자 중에서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선임한다.

⑥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30일전까지 하여야 한다.

⑦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

⑧임원중 상근부회장은 본회의 사업목적과 관련한 다른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을 겸직 할 수 없다.

⑨임원의 취임에 관하여는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